

## [별첨18]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('24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용)

###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('24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용)

본인은 한국장학재단(이하 '재단') 학자금대출을 이용함에 있어,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직원·상담센터 상담원 등을 통해 안내된 사항과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(본인의 의무사항 포함)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< 2024. 1. 2. 기준 >

	이 설명서는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해를 돋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대출제도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. 이용하고자 하는 대출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,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주요서식은 '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-자료실'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--	--

#### 1. 대출제도 개요 및 특성

- 대출명 :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
- 대출한도 : 해당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 
(입학금+수업료 등)
- 대출기간 : 최대 20년(최대거치 10년, 최대상환 10년)

- ▶ 단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
  - ① 최대 거치기간 = 잔여재학년수 + 군복무기간(군미필자 한함)+3년
  - ② 최대 대출기간 = 60세-차주연령
    - \* 차주연령≥56인 경우 최장 대출기간은 5년으로 한함
  - ③ 거치 또는 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설정
- ※ 분할상환(원리금 등 포함)의 경우에는 납입응당일로 만기일이 조정될 수 있음

#### 2. 대출금리 및 지연배상금(연체이자)률

- 고정금리 : 연 0%
- 지연배상금률 : 만기경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시 2.0%부과
  - \* 만기경과 : 대출기한을 경과한 경우
  - \*\* 기한의 이익 상실 :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

#### 5.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부과

- 연체이자(지연배상금) 부과(16년 대출실행분부터 부과)
- ▶ 연체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대출의 만기일(상환기간 종료일)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
- ▶ 지연배상금 : 대출원금\*지연배상금률\*연체일수/365(366)

#### 3. 수수료 및 비용

- 조기(중도)상환수수료(율)
  - ▶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미부과
- 채무자가 법령상의무 불이행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(비용의 부담) 및 제6조(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)에 따라 신청인 등이 부담
  - ▶ ① 채무자 등에 대한 재단의 채권보전조치 비용
  - ②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비용
  - ③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
  - ④ 약정 이자 및 기타 연체 등 사유로 발생한 지연배상금 등
-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
  - ▶ 담보설정비용, 인지대, 제세공과금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반환(여신거래 기본약관 준용)
  - \* 학자금대출은 신용대출로 별도의 담보설정비용(인지세 포함) 없음

#### 6. 응자 제한 대상자

- 이자는 평년의 경우 365일, 윤년의 경우 366일을 1년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
- 분할상환금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,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한 바에 따름

- 응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촌학자금융자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 중인 자
-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약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 대출 연체자 포함
- 구상채무보유자 및 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(재단 자체 프리워크 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)
- 신용도판단정보, 공공정보\*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「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」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
  - \*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 등
- ※ 단,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(등록코드 1311) 제외

- 대학을 미등록하고, 해당학기 등록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자
- 기 응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
  - (단,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)
-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되는 경우
- 대출 부적격자(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)
- 신청 자격 및 증명서 등을 허위 또는 위·변조 시 다음과 같이 제재 조치 가능
  - \* 부당수혜 1회 : 발견일 이후 다음 2개 학기 신청자격 제한  
(지원학기수=정규학기수-2)
  - \* 부당수혜 2회 : 발견일 이후 전체학기 신청 자격 제한

## 7. 상환방법

- 자동이체 :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 등록 후 신청 가능
- 제3자 자동이체
  - ▶ 제3자의 자동이체계좌 변경 신청 및 차주의 동의 확인 후 제3자명의 계좌로 자동이체 변경 가능
- 일회성 가상계좌
  - ▶ 재단 홈페이지에서 생성 후 이용 가능
  - \* 대출상환거래 가능시간 : 평일 09시~21시
  - \*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상환거래 불가

## 8. 조건변경

- 대출기간 변경: 계좌별 1회
  - ▶ 거치기간/상환기간 연장 또는 단축
  - \* 거치기간 종료 시 거치기간 변경 불가
  - ▶ 학생 신청 → 재단 승인 → 학생 약정

## 9. 상환 유예

- 채무자가 연장사유에 따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
- ▶ 재단은 신청내역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후 승인
- ▶ 연장사유 발생일자 기준 연체가 아닐 경우에 한하여 연장 가능
- 연장사유 : 병역, 상급학교 진학, 유학, 출산, 사고 및 질병, 장애, 재난/재해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보이스피싱/불법사금융 피해자, 대학생창업자, 부모의 사망, 부모의 파산면책/개인회생 결정, 부모의 중증질병, 특례조치, 코로나19 실직·폐업자(연장), 실직·폐업자, 졸업 등 미취업자, 육아휴직 등

## 10. 채무면제

- 사망
  - ▶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행정안전부 거주 정보 확인 자료를 근거로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
  - ▶ 재단이 채무면제 등을 결정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판결문 등을 요청할 수 있음
- 장애
  - ▶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상한능력이 없다고 판단(기초생활수급자)되는 경우,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음
  - ▶ 장애 판정일(장애인 증명서 상 등록일자 기준) 이후 받은 대출은 채무면제 대상에서 제외

## 11. 유의사항

- 연체 시 불이익
  - ① 연체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본인의 대출금 연체사실이 집중되고 재단 및 금융기관 거래 장애 발생
  - ② 소득·재산 조사 결과 발견된 부동산 및 급여채권에 법적 조치(가입류 등) 발생 될 수 있음

### ■ 대출 계약 시 개인신용평점

- ▶ 학자금용자 실행 후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되며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 산정결과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

### ■ 대출사실에 관한 통지

- ▶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인 경우, 신청인의 부모님께 학자금대출 정보가 안내될 수 있음

## 12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

- 학자금대출 신청·지급·상환 문의
  - (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농촌학자금융자 정상채권 파트 ☎ 1599-2270, 1번)
-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상환·신용회복(채무조정) 문의
  - (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농촌학자금융자 부실채권 파트 ☎ 1599-2270, 2번)